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678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10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8.

주 문

- 피고와 B(여, C생) 사이에 별지 목록의 '지급일자'란 기재 각 일자의 같은 목록의 '증여액'란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00,566,8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[주위적 청구취지] 주문과 같다.

[예비적 청구취지] 피고와 B 사이에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에 대하여 별지 목록의 '지급일자'란 기재 각 일자의 같은 목록의 '증여액'란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

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별지 목록의 '증

여액'란 기재 각 송금액(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)을 B에게 양도하고, D은행에게 위 각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 본문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최석문

별지